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9. 5.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고기관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30일

라. 상정일자 :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 9.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고기관 의원)

가. 제안이유

-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통합 구체화하고, 보조사업의 결정 순위를 보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추진으로 행복한 교육환경 및 학생 권익 신장을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보조사업의 범위 통합 구체화(안 제2조)
 - 5.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삭제)
 -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설치사업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가. 학력신장 특화사업지원

나. 학교특색사업지원

다. 우수인재 및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지원

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지원

○ 보조사업의 결정순위 보완(안 제5조의2)

1.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3.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4.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이 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권익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기존 제2조제5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삭제하고, 기존 제2조제6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을 안 제2조제5호로 규정하였으며,

- 기존 제2조제7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안 제2조제6호로 하고, 안 제2조제6호가목,나목,다목,라목을 신설 추가하여 보조사업의 범위를 통합하고, 구체화 하였으며,

- 특히, 안 제2조제6호라목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지원”을 규정하여,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

영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의2(보조사업의 결정순위 보완) 규정 중 제2호 내용인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를 안 제5조의2제2호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로 개정 하였으며,
- 안 제5조의2(보조사업의 결정순위 보완)제4호 “학교학부모회,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신설 추가하였으며,
- 기존 제12조(보고 및 검사)를 안 제13조로 하고, 기존 제13조(수당)을 안 제14조로 하고, 안 제12조(보조금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그 사무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명시하여 보조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학력 신장특화사업, 학교 특색사업, 우수인재 및 글로벌리더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학교, 학부모의 의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으로 학생 권익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기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
----------	-----

발의년월일: 2017년 8월 24일

발 의 자 : 고기관 의원 외 5 명

1. 제안이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통합 구체화하고, 보조사업의 결정 순위를 보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수혜자인 학교의 대표성 있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추진으로 행복한 교육환경 및 학생 권익 신장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의 범위 통합 구체화(안 제2조)

5.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삭제)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설치사업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가. 학력신장 특화사업지원

나. 학교 특색사업지원

다. 우수인재 및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지원

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지원

나. 보조사업의 결정순위 보완(안 제5조의2)

1.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3.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4.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6호를 제2조제5호로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가. 학력신장 특화사업지원

나. 학교 특색사업지원

다. 우수인재 및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지원

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지원

제2조제7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8호를 제2조제7호로한다.

제5조의2제2호를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를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제7조제2항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영등포구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7조제3항을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2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명, 그 밖에 교육관련 전문가 3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영등포구 부구청장, 교육경비 담당 국장, 예산담당 국장 및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경비보조금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교육 관련 전문가 3명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7조제4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 of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7조제5항을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보조금의 관리·감독)교육경비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그 사무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5.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p> <p>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p> <p>〈신 설〉</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p> <p>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p> <p>가. 학력신장 특화사업지원</p> <p>나. 학교 특색사업지원</p> <p>다. 우수인재 및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지원</p> <p>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지원</p>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제4조, 제5조 (생략)
제5조의2(보조사업의 결정순위)
제2조의 다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 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3. (생략)
- 〈신 설〉

제6조 (생략)

제7조① (생략)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2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명, 그 밖에 교육관

〈삭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제4조, 제5조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보조사업의 결정순위)-----

-----.

1. (현행과 같음)
2.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3. (현행과 같음)
4.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① (현행과 같음)

- ② -----영등포구 부구청장이 되며, -----
- ③ 당연직 위원은 영등포구 부구청장, 교육경비 담당 국장, 예산 담당 국장 및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경비보조금 담당 국

런 전문가 3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생략)

제12조(생략)

〈신설〉

제13조(생략)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교육 관련 전문가 3명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 위촉된 위원이 -----

-----.

1. ~ 2. (현행과 같음)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현행과 같음)

제13조(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2조(보조금의 관리·감독) 교육경비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그 사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현행 제13조와 같음)